#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5 발의연월일: 2024. 6. 12.

발 의 자 : 홍기원 · 박희승 · 이병진

권칠승 • 민형배 • 이정문

김준형 · 조승래 · 김영배

허 영・안태준・윤호중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나원 퇴소와 함께 정해진 지역 및 주거지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2차 가해 및 신변 노출의 위험에 특히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음. 반면 주거지 이전은 쉽지 않 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해당 지역 및 주거지에서 지 속해서 생활해야 하는 사례가 대부분임.

현행법은 제20조제6항에 신변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 ·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고 있음. 성폭력 피해도 해당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나, 이 역시 '중대한 위해 혹은 그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불필요한 해석

없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021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폭력피해 북한이탈여성 지원사업내실화 방안 연구> 역시 성폭력 피해 북한이탈여성의 거주지 지원에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음.

또한, 남한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이 성폭력 피해를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여,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지역사회와 주거지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다수임.

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이 주거지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및 성폭력 피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성폭력 등으로 신변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로 주거지 이전을 요청한 경우에도 주거이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20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신설).

#### 법률 제 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중 "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인 보호대상자가 그 신변안전을 위하여 주거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 3. 성폭력 등으로 신변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보호대상자 가 주거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주거지원 등) ① ~ ⑤	제20조(주거지원 등) ① ~ ⑤		
(생 략)	(현행과 같음)		
⑥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⑥ <u>다음 각 호</u>		
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신체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			
<u>을 우려가 명백한</u> 경우에는 보			
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 이			
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	<b>.</b>		
<u> &lt;신 설&gt;</u>	1. 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		
	되어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		
	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u>명백한 경우</u>		
<u>&lt;신 설&gt;</u>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성폭력피해자인 보호		
	대상자가 그 신변안전을 위하		
	여 주거 이전을 요청하는 경		
	<u>우</u>		
<u>&lt;신 설&gt;</u>	3. 성폭력 등으로 신변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보		
	호대상자가 주거 이전을 요청		

	하는 경우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